

1. 개정이유

민원 처리기한 단축이 가능한 사무에 대해 개선하여 민원편의성을 도모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새로 발생한 폐기물을 실적보고토록 하며, 전자인계서 입력대행 처리업자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선

2. 주요내용

가. 건설폐기물 처리실적보고 증빙 보완(안 제27조)

- 1)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 시 보고서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적정 처리 유무를 파악하기가 어려움
- 2)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 시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토록 제도 개선
- 3)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현황을 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됨.

나. 전자인계서 입력대행 처리업자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별표3)

-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전자인계서 입력 대행 시 행정처분 기준이 없음
-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전자인계서 입력 대행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 3)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현황을 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됨.

다. 단순 검토사항 민원 처리기한 단축(별지 제10호, 제11호의2, 제14조 서식)

- 1) 사무별 민원 처리기한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단순 검토사항도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 발생

-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수집·운반 대상 건설폐기물 변경, 수집·운반 차량 증차, 건설폐기물 처리업 상호 변경,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상호 변경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기한을 단축
- 3) 민원 처리기한 단축으로 민원 편의성 도모

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보고 시 중간처리 후 발생 폐기물 처리내역 포함(별지 제30호 서식)

-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중간처리를 하면서 발생한 폐기물이 통계로 잡히지 않는 문제 발생
-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실적보고 시 제출토록 개선
- 3)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통계관리로 중간처리과정에서 순환골재 회수율 산정이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같은 호 및 제4호 중 “자에 한한다”를 각각 “자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각호”를 “각 호”로, “경우에 한하며”를 “경우로 한정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가목 및 마목 중 “한하여”를 각각 “한정하여”로 한다.

제13조제6항 중 “재교부”를 “재발급”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경우에 한하며”를 “경우로 한정하며”로 한다.

제23조제3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건설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 처리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29조제7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계량시설 : 1식 이상(측정된 값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전송·입력되어야 하고, 자동전송방법 및 세부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 제2호가목14)부터 27)까지를 각각 15)부터 28)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비고 22)를 23)으로 한다.

14)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 하는 업무를 대행한 경우	법 제25조 제2항제6 호의2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	------------------------	----	------------	------------	------------

별지 제10호서식 처리기간란의 “30일”을 “30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수집·운반 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 운반차량의 증차는 10일)”로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처리기간란의 “10일”을 “10일(건설폐기물처리업의 상호의 변경은 7일)”로, 구비서류란의 “구비서류”를 “첨부서류”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처리기간란의 “10일”을 “10일(상호의 변경은 7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하단에 “첨부서류 처리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건설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 1부.”를 신설한다.

별지 제30호서식 하단에 다음과 같이 표를 신설하고, 첨부서류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중간처리 후 발생 폐기물 처리내역				
폐기물 종류	발생량(톤)	처리자	처리방법	처리량(톤)
총계				

4. ⑨란 중 중간처리 후 발생한 폐기물 처리내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배출자신고를 한 폐기물인 경우 그 종류, 발생량, 처리자, 처리방법 및 처리량을 확인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같은 법</u> ----- ----- ----- -----.
제4조(임시보관장소 승인절차 등) ① 삭제 ②·③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u>의하여</u>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변경승인신청서에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임시보관장소 승인절차 등) ②·③ (현행과 같음) ④----- <u>따라</u> ----- ----- ----- ----- ----- ----- ----- ----- ----- -----.
1. 임시보관장소의 소재지 변경 (관할 시·도 구역내의 소재지 변경에 <u>한한다</u>)	1. ----- ----- ----- <u>한정한다</u> ----- -----

2. 3. (생략)

⑤ (생략)

⑥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보관장소를 승인 또
는 변경승인을 한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즉시 해당 수집·운
반업자의 허가기관에 통보하여
야 한다.

제6조(용역이행실적 등의 신고) 중간처리업자는 법 제14조제3
항에 따라 매년 2월 15일(제2호
의 서류의 경우에는 4월 15일)
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신
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5조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생략)

2.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
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주식
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행
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

2.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
따라 -----

-----.

제6조(용역이행실적 등의 신고) -

-----.

1. (현행과 같음)

2. -----

----- 「주식
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제표	--
3.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u>의</u> <u>한</u>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중간처리 업자로서 품질인증을 받은 <u>자</u> <u>에 한한다</u>)	3. ----- <u>따</u> <u>른</u> ----- ----- ----- <u>자</u> <u>로 한정한다</u> ----- -----
4. 별지 제6호서식의 순환골재 판매내역서(중간처리업자로서 품질인증을 받은 <u>자에 한한</u> <u>다</u>)	4. ----- ----- ----- <u>자로 한정한</u> <u>다</u> ----- --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제9조(배출자의 신고 등) ① (생 략)	제9조(배출자의 신고 등) ① (현행 과 같음)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 리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u>교</u> <u>부</u> 하여야 한다.	②----- ----- ----- ----- ----- <u>발</u> <u>급</u>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① 삭 제	제12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②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	②----- -----

[illegible]

1. (현행과 같음)
2. ----- 각 호-----
-
-
-
-
-
- 경우로 한정하
- 며-----
-

- ③ (현행과 같음)
- ④ -----
-
-
-
-
-

1. (생략)

2.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갖추는 것. 다만 라목 또는 마목의 시설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보관시설 전체를 두르는 높이 10미터 이상의 방진벽(사업장 부지에 방진벽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설치되었음에도 보관 중인 폐기물이 외부에서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나. ~ 라. (생략)

마. 지붕 덮개시설(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⑤ ~ ⑧ (생략)

제13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 ⑤ (생략)

⑥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1. (현행과 같음)

2. -----
-----.

-----.

가. -----

----- 한정하여 -----

나. ~ 라. (현행과 같음)

마. -----

- 한정하여 -----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3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허가증
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
치승인 등) ①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
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 건설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
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폐기
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시
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서의 첨부서류(배출
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 내지 제6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
한다)

② ~ ⑤ (생략)

제23조(권리·의무의 승계신고)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
지 제21호서식의 권리·의무승

-- 재발급-----.

제16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
치승인 등) ①-----

-----.

1. ~ 6. (현행과 같음)

7. -----

----- 경우로
한정하며-----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권리·의무의 승계신고) -

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략)

3.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중간처
리업 승계의 경우에 한한다)

제27조(보고서 제출) ① 배출신고
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폐기
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제출하되,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
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건설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2월말(해당 연도 중
에 준공되는 경우에는 준공
후 15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검사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

1.·2. (현행과 같음)

3. -----

----- 한정한다

제27조(보고서 제출) ① -----

----- 건설폐기
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건설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 처리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
한다)를 -----

제28조(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환경
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배출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제29조(시험·분석기관) 환경부장
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라 관계공무원에게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하는
경우에 배출되는 폐기물 또는
재활용한 제품·시설물 등의 성
분, 순환골재의 품질 등의 검사
를 위한 시험·분석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의 시험·분석기관
으로 하여금 이를 시험·분석하
게 할 수 있다.

1. ~ 6. (생략)

7.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8. (생략)

제30조의2(중간처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법 제5

----- 발급-----.

제29조(시험·분석기관) -----

-----.

1. ~ 6. (현행과 같음)

7. -----
----- 따라 -----

8.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중간처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

5조에 따른 협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③ · ④ (생략)	-----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 ----- -----. ③ · ④ (현행과 같음)
--	--